

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상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1. 11. .

발 의 자 : 이상기,백선아,전용균

김지훈,신민철,김현택

이창희

1. 제안 이유

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혁신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환경혁신을 선도하는 시민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환경혁신을 위한 사업(안 제3조)
- 나. 에코연합회 구성 및 기능(안 제4조)
- 다. 임원회의 구성 및 운영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지원 및 포상(안 제8조 및 제9조)

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

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양주시 특성에 맞는 환경혁신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환경혁신을 선도하는 시민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환경혁신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환경혁신 사업”이란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,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등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사업)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순환 사업(폐아이스팩, 폐의류 재사용 등)
2.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
3. 환경혁신사업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
4. 타 시·도 우수사례 공유 및 환경혁신사업 확산 등을 위한 교류
5. 환경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남양주시 에코 연합회 구성) ① 시장은 환경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법인·단체 등을 연합하여 남양주

시 에코 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를 구성 할 수 있다.

② 연합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제3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봉사 및 지원
2. 연합회 소속 단체 및 시민 간 협력 증진 및 정보교류

제5조(임원회의 구성) ① 시장은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시 에코 연합회 임원회의(이하 “임원회의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한다.

1. 회장 1명
2. 부회장 2명
3. 자문위원 2명

③ 회장은 연합회의 임원 중에 시장이 임명하고, 부회장은 임원 중에 호선한다.

④ 자문위원은 남양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한다.

⑤ 자문위원을 제외한 임원은 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임원회의 운영) ① 임원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3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
2. 연합회의 조직·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
3. 그 밖에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7조(회의수당 등) 제6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또는 「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 등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환경혁신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연합회 회원 및 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피복비, 활동수첩 등 소모품 구입
2. 생활폐기물 줄이기, 자원재활용 등에 필요한 행사, 워크숍, 교육
3. 환경혁신사업을 위한 홍보물품
4. 그 밖에 환경혁신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제공의 대상 및 방법을 예산의 범위내로 정한다.

제9조(포상) 시장은 환경혁신 사업에 기여한 실적이 현저한 시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「남양주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「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안 제7조(회의수당 등), 제8조(지원 등), 제9조(포상)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환경혁신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추진 및 환경혁신을 선도하는 시민공동체 운영 비용
 - 남양주시 에코연합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순환 사업, 환경혁신사업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회의, 환경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지원

나. 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구분	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총 소요액	1,0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
환경혁신을 위한 사업	1,0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

다. 재원조달방안: 해당연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
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: 해당없음

4. 작성자 : 환경국 자원순환과장 김길원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: 천원)

구 분		2022년	2023년	2024년	2024년	2025년	계
세 입							
세 출	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1,000,000
	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1,000,000
재원 조달	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1,000,000
	시 비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1,000,0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